광운대학교 중앙선거시행세칙



개정 연혁

2024.10.02 전부개정 2025.9.29. 일부개정

광운대학교 총학생호

光云大學校 總學生會



목 차

중앙선거시행세칙

총		칙	
선	거권 및 피선거	권	4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5
후	<u></u> 보	자	······································
선	거 운 동 본	부	10
선	거 운	동	
징		계	
투		끂	
개		끂	20
당		선	22
재	보 궐 선 거 및 선 거 무	산	23
세	칙 개	정	24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중앙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광운대학교 총학생회칙(이하 "회칙" 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해체까지 선거 공고, 후보 등록, 선거 운동, 투표, 당선인 결정 등을 가리키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본 세칙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 ②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타 자치기구의 선거는 자체 회칙 및 세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된 회칙 및 세칙이 없거나 부실한 자치기구의 경우,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하여 이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할 수 있다.

제4조(선거 원칙)

- ① 본회 회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시행된다.
- ②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 ③ 본 선거에는 어떠한 개입도 허용하지 않는다. (단, 선거진행에 관하여 학교당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1. 현 학생자치기구. 학교당국. 외부 세력 등의 개입을 금지한다.
 - 2. 개입이란 본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선출 과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세칙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중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⑤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5조(선거권) 선거권은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정회원 모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 개시일 5일 전 기준 본회 정회원에 한한다.

제6조(피선거권)

- ① 본회 회원의 피선거권은 당해 학기 자율적학생경비 납부 여부를 공시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한다. (단, 당해 학기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경우예비후보자 등록 전 그 직위를 사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 1. 본회의 회원으로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자 (단, 휴학 중인 자는 다음 학기 복학 서약서를 작성한다. 서약서 미이행 시에는 당선을 취소한다.)
 - 2. 본회의 정회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라 한다)는 본회의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한 독립기구이다.

제8조(목적) 중선관위는 본회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되며, 본회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구이다.

제9조(구성)

- ①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학대회 의장은 투표 시작일 30일 이전에 중선 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권은 중운위가 갖는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호선된 1명으로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명과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부위원장은 중선관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 선출된 1명으로 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또는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⑥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원활한 제반 업무 처리를 위해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집행위원으로 둘 수 있다. (단, 집행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10조(임기) 중선관위의 임기는 당선자의 확정과 선거의 제반 일정이 모두 끝난 후 중앙선 거관리위원장의 선거 종료 공고와 동시에 끝난다.

제11조(의무) 중선관위는 본 세칙을 준수하며 선거 진행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12조(업무 및 권한) 중선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선거 전반의 질서 유지 및 감독
- 2. 선거인 명부 작성
- 3. 선거 일정 및 주요 사항 공고(온라인 선거의 경우, 그 방법 및 본회 회원의 개인정보 동의와 같은 절차상의 주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4. 입후보자 자격 결정 및 심사
- 5. 투표 결과 및 당선인 확정 공고
- 6. 선거 및 당선의 무효 여부와 재선거 여부 결정
- 7. 중앙선거관리위원 징계 심사 및 의결 (단, 자격 박탈 및 해임의 징계 시 중운위의 의결을 거친다.)
- 8. 중앙선거시행세칙 위반 여부 판단 및 징계 의결
- 9. 기타 선거와 관련된 제반 업무

제13조(개회 및 의결)

- ① 중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중선관위 의결은 출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에 규정한 사항 중 중앙선거시행세칙 위반 여부 판단 및 징계 의결은 출석한 중앙 선거관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겸직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특정 후보를 위한 참관인 및 선거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운위의 의결을 거쳐 자격 박탈 처분을 내린다.

제15조(위원의 해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때가 아니라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해임은 중운위의 의결을 거친다.

- 1. 특정 선거운동본부에 참여하거나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활동에 관여한 때
- 2. 특정 후보를 위한 참관인으로 활동한 때
- 3. 학칙 위반 등의 이유로 학교 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때

제16조(위원의 사퇴)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 출마, 군입대, 취업, 휴학 등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사퇴할 수 없다.
- ② 본조 제1항에 명시된 사유로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퇴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본조 제2항의 사퇴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실관계확인 후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 일정의 공고) 중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일 7일 전에 선거 일정을 공고한다. (선거 일정은 예비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 선거 운동 기간, 투표일, 이의신청 기간을 의미한다.) 제18조(선거인 명부)

- ① 중선관위는 선거 시작일 5일 전 본교에 등록을 필한 재학생을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 ② 선거인 명부에는 학부•학과, 학년, 학번, 성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후보자의 공탁금으로 책정한다.

제20조(선관위 결산) 중선관위는 투표 종료일로부터 3일 안에 공탁금에 관한 결산안을 공개하며 결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전학대회는 결산안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후보자

제21조(예비후보자 등록)

-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당해 연도 중선관위가 정한 기한까지 중선관위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선관위가 정한 사퇴 기간 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1. 총학생회장단
 - 2.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성원
 - 4. 단과대학 부학생회장, 학부•학과 부학생회장 및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 5. 단과대학 학생회, 학부●학과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
 - 6. 선거기간이 겹치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부•학과,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의 선거관리위 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련된 직위를 가진 자
 - 7. 신문사, 방송국 등 학생자치 언론에 소속된 자
- ③ 본조 2항에 따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중선관위에서 정한 양식에 맞춰 사퇴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본조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비후보자 등록워
 - 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재학증명서 각 1부
 - 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약력
 - 4. 선거운동본부 등록원
 - 5. 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증명서 1부
- ⑤ 본조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선관위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되, 본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수리할 수 없다.
- ⑥ 본조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서류를 제출하는 즉시 별도의 심사 없이 후보자 등록 전까지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갖는다.
- ⑦ 중선관위는 제출받은 서류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후보자 등록)

- ①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로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는 당해 연도 중선관위가 정한 기한까지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1. 총학생회장단 입후보 등록원
 - 2. 총학생회장단 입후보자 재학 증명서 각 1부
 - 3. 입후보자 추천서
 - 4. 명함판 실물 사진

- 5. 5개 이내의 핵심 선거 공약
- 6. 온라인 투표 사이트에 기입할 정보(이름, 생년월일, 학과, 학년 등)
- 7.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 8. 공탁금 80만원
- 9. 공정선거 서약서 각 1부
- 10. 선거운동본부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소(단,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소가 없는 경우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23조(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

①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은 당해 연도 중선관위가 정한 기한으로 한다.

제24조(후보 자격 심사)

- ①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제21조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② 본 절차는 서류의 진위 확인 및 자격 적격 판정을 목적으로 하며, 제24조의 기준으로만 심사하여야 한다. (단, 출마 선언은 제출 여부로 적격을 판정한다.)
- ③ 본 절차는 중선관위가 관장하며, 필요에 따라 중선관위 집행위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④ 중선관위는 등록 마감 직후 본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고, 등록 마감으로부터 12시간 이내 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5조(후보 자격 심사 기준) 후보 자격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제5조에 따른 피선거권 여부
- 2. 추천인 기준 충족 여부 (단, 본항에 대하여서는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없다.)
- 3. 제출 서류 진위 여부 (약력 진위 및 공약 개수 여부)

제26조(후보 자격 심사 결과 통보)

- ① 중선관위는 후보 심사 완료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고, 접근성이 높은 공식 매체에 게시하여야 하며, 부적격 통보는 그 판단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본조 제1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보 시점부터 등록 마감일 익일 정오까지만 가능하다.
- ③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중선관위는 제24조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는 단 1회만 가능하다.
- ④ 후보 심사 결과 통보 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및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선거 종료 시 중선관위는 추천인 명단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공고)

- ① 등록공고는 후보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선거운동본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중선관위는 교내 게시판, 공식 매체 등 접근성이 높은 매체에 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등록공고는 후보자, 유세 기간, 투표 장소, 투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선거운동본 부의 출마선언서, 공정선거 서약서, 약력 사항, 선거 공약, 후보자의 교내 징계 및 범죄 이력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후보자 사퇴)

① 총학생회장단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두 명이 동시에 중선관위에 사퇴 문서를 대면 접수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기간 종료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다.)

제5장 선거운동본부

제29조(목적)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한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을 통해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 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이다.

제30조(구성)

- ①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하다.
- ②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 이외의 참모진을 둘 수 있다.
- ③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본부원은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본부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⑤ 선거기간 중 두 개 이상의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이 겹치는 자치기구 선거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할 수 없다.

제31조(선거운동본부 사무실)

- ① 선거운동본부 사무실은 원활한 선거운동을 위한 제반사항 및 준비물을 둘 수 있는 공간이다.
- ② 선거운동본부는 사무실을 둘 수 있다.
- ③ 각 선거운동본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은 중선관위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1. 자치기구의 사무실
- 2. 총학생회실 및 이에 준하는 공간
- 3. 그 밖에 중선관위의 판단에 따른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
- ④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학내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선거운동본부에게는 중선 관위는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제32조(선거운동본부장)

-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를 보좌하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중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총학생회장단 후보자가 임명한다.
- ③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은 중선관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에는 신임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 학부•학과, 전공, 학번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이 중선관위에 접수되면 중선관위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여 야 한다. (단, 심사 결과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는 경우, 중선관위는 이를 시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운동본부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

퇴 기간 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1. 총학생회장단
- 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
- 3. 전학대회 성원
- 4. 선거기간이 겹치는 총학생회 선거의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실무에 관련된 직위를 가진 자
- ⑥ 본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중선관위에서 정한 양식에 맞춰 사퇴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33조(공개 모집)

-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공고가 있는 후부터 선거운동본부원 공개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수 있다. (단,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명시할 수 없다.)
 - 1. 선거운동본부명
 - 2. 후보자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 학번
 - 3.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 학번
 - 4. 담당자 연락처
 - 5. 1.000자 이내의 선거운동본부 소개문
- ② 선거운동본부원을 공개 모집을 하고자 하는 선거운동본부는 본조 1항의 공고문을 중선관 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선관위는 본부원 모집 공고문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회의를 열어 공고문을 심의한다.
- ③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때 중선관위는 공고문의 게시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위반사항이 있는 부분을 시정하여 공고문을 재심의받을 수 있다.)

제34조(등록)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참모진, 선거운동본부원을 중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 등록은 후보자 등록과 함께하며, 그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이를 중선관위에 보고한다. 변동 사항은 매일 18시까지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한 변동 사항은 익일부터 유효하다.
- ③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학생회장단
 - 2. 중선관위 구성원
 - 3.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
 - 4. 전학대회 성원
 - 5. 단과대학●학과●특별기구 집행부장 및 집행부원으로 인준을 받은 자
 - 6. 단과대학•학과•특별기구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실무에 관련된 직위를 가진 자
 - 7. 본회 회원이 아닌 자

제6장 선거운동

제35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하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및 후보 등록을 위한 준비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는 본 세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36조(선거운동기간)

- ①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연도 중선관위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 ②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마지막 날 23시 59분까지로 한다. 선거운동 종료 이후 모든 유세 활동은 금한다.

제37조(선거운동 자격)

- ①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및 해당 총학생회장단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만 할 수 있다.
- ② 선거운동본부장과 선거운동본부원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38조(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의실 유세
 - 2. 합동유세 지지유세
 - 3. 후보자의 캠퍼스 내 길거리 연설
 - 4. 정책토론회
 - 5. 학내 언론단체 주최의 토론회, 인터뷰, 청문회 등
 - 6. 선전물(유인물, 현수막, 입간판, 피켓, 영상 등)의 게시●배포
 - 7. 온라인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
- ② 선거운동 진행 시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39조(강의실 유세)

- ① 강의실 유세는 수업 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 내에서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정견 발표 와 홍보물 배포 등의 행위를 말한다.
- ② 강의실 유세는 교수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10분 이내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후보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 ③ 강의실 내에서 단순히 홍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강의실 유세로 보지 아니한다.
- ④ 교수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도 유세할 수 있다.
- ⑤ 기타 강의실 유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룰미팅에서 정한다.

제40조(합동유세 ● 지지유세)

① 합동유세는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간에 진행하는 유세를 말하며, 총학생회장단 후보자가 1팀일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

- ② 합동유세는 총 2회로 하고 팀당 3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지유세를 진행할 경우 합동유세 시간에 포함된다.)
- ③ 지지유세는 모든 합동유세 시에 진행하는 특정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를 지지하는 제3자의 유세를 말하며, 본회 정회원만 가능하다.
- ④ 기타 합동유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룰미팅에서 정한다.

제41조(정책토론회)

- ① 정책토론회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장이 정책을 순 차적으로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정책토론회는 선관위에서 관할하며 질의응답 시 특정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방이 섞여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다. (단, 정책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
- ③ 기타 정책토론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룰미팅에서 정한다.

제42조(학내 언론단체 주최의 토론회, 인터뷰, 청문회 등)

①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는 교내 언론기관의 토론회, 인터뷰, 청문회 요청이 있을 때 선관위 와 언론사의 협의 하에 동등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제43조(선전물의 사전 허가)

- ①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영상은 중선관위에서 내용 및 개수의 사전 허가를 거친 후 게시•배포한다.
- ② 중선관위는 전자형태의 파일을 통해 사전에 내용을 심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③ 선거운동본부는 사전 심의를 위하여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영상을 게시●배포하기 24 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게시물●유인물●영상이 허가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다시 게시물●유인물●영상 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게시물은 포스터 등 학교 내 게시판에 부착하는 오프라인 게시물과 온라인 선거운동 공 간에 게시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물로 분류한다.
- ⑥ 유인물은 팜플렛, 리플렛, 명함 등을 의미한다.
- ⑦ 각종 게시물•유인물•영상의 규정 및 세부 사항은 룰미팅에서 정한다.

제44조(온라인 선거운동)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커뮤니티, SNS 등의 온라인 선거운동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선관위가 허용된 공간 이외의 온라인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각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이디와 닉네임을 1차 룰미팅 기간 전 중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중선관위가 선거운동본부로부터 아이디를 보고받으면 각 선거운동본부별 온라인 플랫폼 과 아이디를 공고한다.
- ⑤ 온라인에 게시할 모든 선거운동 내용은 사전에 중선관위 심의를 거쳐야 하며, 게시 24시

간 전 중선관위에 해당 게시물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타 온라인 선거운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룰미팅에서 정한다.

제45조(룰미팅)

- ①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 운동본부장이 참가하는 룰미팅을 개최하여야 한다.
- ② 회칙 및 세칙에 제시되지 않은 선거운동 및 선거진행에 관한 사항은 룰미팅에서 정한다.
- ③ 각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이디와 닉네임을 룰미팅 기간 전 중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룰미팅에서 합의된 사항은 세칙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⑤ 룰미팅 사항은 세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⑥ 룰미팅에서 협의한 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징계

제46조(징계) 징계란 회칙 및 세칙상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룰미팅에서 협의된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해당 총학생회장단 후보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징계대상)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1. 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2. 추천인 서명 선거운동본부원 명단을 위조한 경우
- 3. 선거운동본부워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운동본부워 명단에 있는 경우
- 4.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 5.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 세칙 및 룰미팅 협의사항을 위배한 경우
- 6. 중선관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선전물•유인물•영상을 배포한 경우
- 7.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예상하는 모의투표 및 인기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 8. 협박, 폭행 및 납치행위를 한 경우
- 9.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유포를 한 경우
- 10. 상대 총학생회장단 후보자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비방행위를 한 경우
- 11. 상대 총학생회장단 후보자의 선전물 게시 및 유인물 배포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 12. 투표기간 내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단, 투표장 외에서 선거 참여 독려는 가능하다.)
- 13. 기타 본 회칙과 세칙을 위배하거나 룰미팅 협의사항을 위배한 경우
- 14. 기타 민주적 선거 질서를 위배한 경우

제48조(징계절차)

- ① 제4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선관위는 의결을 거쳐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② 징계 의결은 중선관위 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징계 의결에 관한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징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시, 선관위 내부 의결을 통해 성원 2/3의 출석과 2/3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제49조(징계의 종류)

- ① 징계는 주의 및 경고가 있으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 ② 주의는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징계이며, 주의를 받은 선거 운동본부는 이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
- ③ 경고는 선거의 공정을 해칠 중대한 우려가 있거나 민주적 선거 질서를 위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징계이다.
- ④ 1차 경고 시에는 24시간 동안 새로운 게시물•유인물•영상 게시 및 배포와 함께 선거운 동이 금지되며 12시간 이내에 교내와 온라인 선거운동 공간에 사과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⑤ 2차 경고 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한다.

제50조(징계 공고) 중선관위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12시간 이내에 이를 교내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3일간 게시한다.

제51조(이의제기)

- ① 징계에 관한 이의제기는 선거운동본부장의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 ② 징계 사항에 대하여 선거운동본부장으로부터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경우 중선관위는 지체 없이 이를 재심의하여야 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선거나 개표 당시는 선거운동본부장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이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이의의 공정성)

- ① 중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 수호를 원칙으로 하며, 징계를 내림에 있어 공정하고 신중 해야 한다.
- ② 징계 사항에 대하여 유권자의 1/10 이상의 불만이 있는 경우 중선관위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유권자의 1/10을 증명할 수 있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8장 투표

제53조(투표기간)

- ① 투표일은 당해 연도 중운위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 ② 투표는 3일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선관위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 연장 일수는 1일로 제한한다.)
- ③ 투표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로 하며, 온라인 투표 시간의 경우 투표 개시일 09:00 부터 투표 종료일 19:00까지로 하다.
 - (단, 부득이하게 투표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투표 개시 24시간 전까지 중선관위 회의를 통해 각 일자별 투표시간을 미리 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투표 마감시간 이후라도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마감하여야 한다. (단, 투표시간을 넘겨서 투표소에 도착한 선거권자는 투표를 진행하지 못한다.)
- ⑤ 중선관위의 과실로 보장되지 못한 투표시간은 그 시간만큼 당일에 연장하여야 하며, 중선 관위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54조(투표소)

- ① 투표소의 설치 장소는 중선관위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 ② 투표소는 각 건물마다 중선관위에서 결정한 층에 초록색 테이프 안으로 정한다.
- ③ 투표소의 기표 장소는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한다.
- ④ 온라인 투표로 시행하는 선거에서는 별도의 투표소를 두지 않는다. (단, 당해 연도 중선관위의 의결을 통해 별도의 투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중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에 투표소를 둘 수 있다.)

제55조(투표방법)

- ① 투표방법엔 무기명 기표 방식과 온라인 투표 방식이 있다.
- ② 투표는 무기명 기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연도 중선관위 의결에 따라 투표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다. (단, 야간대학 및 평생교육단과대학은 온라인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투표방법에 변경이 있을 경우, 중선관위는 선거 일정 공고와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 ④ 장애인 및 기타 투표 방법에 제한이 있는 자의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중선관위 및 참관인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제56조(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중선관위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인쇄는 검정색으로 한다. 제57조(투표절차)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선관위의 선거권자에 대한 신분확인
- 2. 선거인명부 확인
- 3. 투표자의 날인 및 서명
- 4. 투표용지 배부
- 5. 중선관위의 날인 (단, 이 경우 중선관위 집행위원의 날인도 가능하다.)
- 6. 참관인의 날인
- 7. 투표

제58조(신분확인)

- ① 투표를 위한 신분확인은 광운대학교 학생증으로 한다
- ② 학생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도서관 모바일 이용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단, 모바일 신분증 및 확인서비스의 경우 캡쳐본 및 저장된 이미지는 불가하다.)
 - 1. 주민등록증
 - 2. 운전면허증
 - 3. 모바일신분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4. 정부24 주민등록 확인서비스
 - 5. ROTC증
 - 6. 외국인 등록증
 - 7. 여권
 - 8.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③ 전항 각 호 외의 신분증은 중선관위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59조(투표함) 투표함은 중선관위가 제작한다.

제60조(투표함의 이송)

- ① 투표함은 투표 개시일부터 매 투표일 선거 개시 10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선거운 동본부원 1인이 함께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 ②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및 제반 물품은 참관인의 입회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 혹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이 관리한다.
- ③ 당일 투표가 종료된 이후 투표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선거운동본부원 1인이 함께 각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 ④ 투표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 대표는 함께 직인을 찍고 봉 인한 후 즉시 개표장으로 이송한다.
- ⑤ 이송 시 투표함과 함께 개표장으로 이송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거인명부
 - 2. 참관인 확인서 및 구비서류
 - 3. 기타 개표에 필요한 물품
 - 4. 기타 제반 물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하에 이송을 수행한다.

제61조(참관인)

- ① 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을 참관 및 감독하여야 한다.
- ② 참관인은 선거 당일 투표 개시 30분 전까지 해당 투표소로 출두하여야 하며 중앙선관리 위원회실에서 투표함 확인 후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함께 투표함을 운반하여야 한다.
- ③ 각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는 각 투표소마다 후보자가 임명한 참관인을 배치할 수 있다. (단. 참관인 수는 투표소 장소 상황에 따라 중선관위가 조정할 수 있다.)
- ④ 참관인은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된 자로 한한다.
- ⑤ 각 선거운동본부는 참관인을 투표 개시일로부터 2일 전까지 참관인 명부와 재학증명서를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각 선거운동본부는 참관인의 시간표를 매 투표 개시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참관인은 투표기간 동안 중선관위가 배부한 참관인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⑧ 투표과정에 대한 이의 여부를 매시간 교대 전 참관인에게 각서를 받아야 한다.
- ⑨ 투표소 내에서 행한 참관인의 결정 사항에 대해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2조(참관인 규제)

- ① 참관인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에 간섭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② 참관인이 투표소 내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 중선관위는 주의를 줄 수 있으며, 2회 주의를 받은 경우 중선관위는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③ 퇴장을 당한 참관인은 투표종료까지 모든 투표소에서 참관인 자격을 상실한다.
- ④ 투표 참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1. 투표를 방해하는 경우
 - 2.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3. 특정 입후보자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하는 경우
 - 4.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지 않는 경우
 - 5. 기타 중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간주한 경우

제63조(참관인의 이의제기)

- ① 참관인은 투표 진행사항에 대하여 중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제기한 경우 중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입회 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중지한다. (단, 이 경우 중지된 만큼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이의제기가 중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기각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해당 투표소에서 참관인이 불참한 경우 중선관위와 타 선거운동본부의 참관인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⑤ 참관인은 투표 시간 중 해당 투표소를 떠날 수 없으며 중선관위는 특정 선거운동본부 측의 참관인 부재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이의제기는 기각한다.

제64조(투표중지) 중선관위는 투표 질서가 심히 문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투표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질서가 회복된다면 다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중선관위의 관리 귀책이 있는 경우 중지된 만큼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9 장 온라인투표

제65조(정의) 온라인투표란, 모바일이나 웹 환경에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투표를 말한다.

제66조(적용범위) 본 장은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는 선거에 타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온라인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회칙 및 본 세칙 및 중선관위의 의결 에 따른다.

제67조(온라인투표) 온라인투표는 선거 기간 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투표를 진행한다.

제68조(온라인 투표 시행 여부 결정)

- ① 중선관위 소집 이후, 중선관위는 선거 일정 공고일 이전까지 온라인 투표의 시행 여부를 의결한다.
- ② 중선관위는 온라인 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선거 일정 공고와 동시에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중선관위는 선거 진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선관위의 의결을 통해 온라인 투표의 시행 여부를 번복할 수 있다.
- ④ 온라인 투표 시행 여부를 번복할 경우, 번복 사유를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하며, 선거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1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제69조(온라인 선거시스템에서의 유효한 투표)

- ① 모든 유권자는 총학생회 선거, 단과대학 학생회, 학부·학과 학생회 선거에 대하여 광운대학교 KLAS 계정 당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본인의 계정으로 직접 온라인 선거시스템에 접속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무효표로 한다.
- 1. 중복투표로서 투표지 항목 중 둘 이상의 표기를 하여 제출한 경우
- 2. 기권표로서 기권 항목에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
- ③ 중복투표 및 기권표 제출의 가능 여부는 온라인 선거시스템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선관위의 의결을 따른다.
- ④ 투표지를 제출하기 전에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종료한 경우 투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⑤ 프로그램의 오류 등 기타 사정으로 투표지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이 완료되었음에도 투표의 내용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의 상실 여부는 중선관위의 결정으로 한다.

제70조(온라인 투표 상의 부정행위)

- ① 고의로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해킹하거나 서버를 과부하 시킬 의도로 반복 접속하는 경우,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선거를 방해하는 등 온라인 선거시스템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 본회 회원이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공정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이를 학교 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

- 1. 선거자의 신분확인정보를 탈취하여 투표하는 행위
- 2. 선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자의 투표 과정이나 투표 결과를 확인하거나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투표하게 하는 행위
- 3. 선거자 본인이 아닌 자가 대리로 투표하는 행위
- 4. 이외의 선거부정행위
- ③ 본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중선관위의 판단에 따른다.
- ④ 중선관위는 온라인 투표 상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며, 징계는 제7장의 내용에 따른다.
- ⑤ 부정 투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유권자에 의한 투표는 득표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1조(온라인 투표의 이의제기) 온라인 투표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거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의 절차는 본 세칙 제50조에 내용에 따른다.

제72조(기타) 본 제9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 이외에 선거와 관련한 기타 모든 온라인 투표의 세부사항은 본 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개표

제73조(개표)

- ① 개표 사무는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중선관위에서 담당한다.
- ② 개표는 오프라인 투표함을 먼저 개봉한 후 온라인 투표의 결과를 더한다.(단, 온라인투표 만 진행할 경우엔 온라인 투표의 결과만을 집계한다.)
- ③ 중선관위는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선관위 집행위원을 개표관리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74조(온라인 투표에서의 개표)

- ① 온라인 선거에서의 개표는 투표 종료 후 개표 장소에서 개표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여건 이 갖추어 진 경우 위원장의 개표 시작 선언으로 시작한다.
- ② 개표 장소는 온라인 선거시스템으로 개표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하여 중선관위가 정한다.
- ③ 본조는 제71조제1항, 제3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75조(개표관리위원)

- ① 개표관리위원은 개표소에서 공정하고 원활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② 개표관리위원은 중선관위 집행위원으로 한다.

제76조(개표 일정)

- ① 개표는 공개로 진행하며 개표 시간과 장소는 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유사시에 중선관위는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합의를 통해 당일 조정할 수 있다.)
- ② 개표는 투표 마감 후 투표 실사업무가 끝난 후 실시한다.

제77조(개표소)

- ① 개표장은 개표와 참관이 용이한 교내의 공개된 장소로 중선관위에서 정한다.
- ② 개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개표관리위원, 개표 참관인만 입회가 가능하다.
- ③ 개표소에서의 연락은 중앙선거관리위원만 가능하다.

제78조(개표 개시)

- ① 모든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각 후보자 간의 개표 참관인이 투표함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를 실시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개표 참관인은 개표 사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개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질서 유지를 위하여 개표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를 징계 및 퇴장 조치할 수 있다.
- ④ 중선관위는 각 후보 개표 참관인으로부터 개표 과정에 본 회칙 및 세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관한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79조(개표절차)

- ① 개표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투표인 수 공고
 - 2. 투표함 개봉
 - 3. 개표
 - 4. 참관인 재확인 및 득표의 결산
 - 5. 현황판에 기재
- ② 개표절차에서 발생하는 선거운동본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제기는 세칙 전반에 걸친 징계에 준하여 징계하고 개표를 진행한다.

제80조(무효표)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무효표로 간주한다.
 - 1. 기권
 - 2. 중선관위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투표용지
 - 3. 참관인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투표용지
 - 4. 기표란 외의 부분에 기표한 투표용지
 - 5. 지정된 도구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 6. 직인 또는 순번이 확인 불가한 투표용지
 - 7. 제70조제2항에 따른 무효표
 - 8. 이하 개표를 종료할 때까지 중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는 투표용지
- ② 무효표는 투표율에 포함하다.

제81조(기권표) 중선관위의 도장과 참관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상태에서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 한것을 기권표라 한다.

제82조(투표행위) 투표용지에 중선관위의 도장과 참관인의 도장이 둘 다 찍혀있지 않은 경우는 투표행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선거관련서류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다음 학생회장 임기 시작 시까지 보안문 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장 당선

제84조(당선)

- ① 본회 정회원 2/5 이상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최다득표 조를 당선자로 한다.
- ② 재적인원 2/5 이상의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표 결과를 인정받을 수 없다.
- ③ 단일 후보자의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본회 정회원 2/5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제85조(당선인) 당선인 자격은 총학생회칙 제47조에 따른다.

제86조(당선공고) 개표 이후 당선인이 결정되면 중선관위는 당선 사실을 지체 없이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7조(당선에 관한 이의제기)

- ① 유권자는 누구든지 당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 공고 이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선관위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 ② 중선관위는 본조 1항의 이의제기가 인정될 때 의결을 거쳐 당선 무효에 관한 안건을 전학대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때 의결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8조(선거에 관한 이의제기)

- ①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선 공고 이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선관위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 ② 중선관위는 본조 1항의 이의제기가 인정될 때 의결을 거쳐 선거 무효에 관한 안건을 전학대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때 의결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장 재보궐선거 및 선거무산

제89조(선거 무효)

- ①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중선관위는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에 관한 안건을 전학 대회에 상정할 수 있다.
- ② 선거에서 선거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 이듬해 3월에 재선거를 진행한다.

제90조(선거 무산)

- ① 선거 무산은 총학생회장단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록 취소 처분으로 인한 후보자 없음의 경우에 선언한다.
- ② 선거 무산의 경우 본조에 따라 이듬해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1조(재투표)

- ① 재투표는 한 번의 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을 때 실시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선관위 의결을 거쳐 3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1. 각 총학생회장단 후보자간의 득표율이 동률일 경우 (단, 재투표 시에도 동률일 시 전학 대회를 통해 간선제로 선출한다.)
 - 2. 단일 후보자일 시, 가부동수의 경우
 - 3. 중선관위의 실수로 투표 과정의 무효가 선언된 경우
 -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하루 이상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 ② 재투표가 결정될 경우, 중선관위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하며, 재투표 일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중선관위의 의결에 따른다.
- ③ 재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각 선거운동본부의 추가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당해 연도 중선관 위의 의결에 따른다.

제92조(재선거)

- ① 재선거는 예비후보자 등록부터의 모든 선거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선거가 선거 무효나 선거 무산이 될 경우 이듬해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 1. 직전 선거에서 당선 무효 처분을 받은 자
 - 2. 직전 선거에서 당선된 후 임기 개시 전 사퇴한 자

제93조(보궐선거)

① 총학생회장단 모두 특별한 사유, 사직, 사망, 자격 상실 등의 이유로 인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위가 궐위 및 유고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 임기가 120일 이하인 경우 그 직위가 비게 된 날로부터 즉시 총학생회칙 제9장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4조(예외사항) 세칙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회칙 및 세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선관위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공고한다.

제13장 세칙개정

제95조(세칙개정) 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총학생회칙 제17장을 따른다. (단, 본 세칙은 중 앙선거관리위원 명단이 공고되면 선거 기간 동안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없다.)

제96조(효력) 본 세칙의 개정안의 효력이 시행되는 일자를 각 부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부칙에 명시된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개정 세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준용) 본 세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단, 본회의 의결방식에 따라 결정한다.)